

◎ 법률 제4,388호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본문중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조업정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대형 환경오염사고가 빈발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하고 하천 등 공공수역에 당해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는 자 등 환경범죄행위자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벌칙이 환경오염행위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에 비하여 미흡하므로 이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으로써 수질환경범죄에 강력히 대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 보전 법 중 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 태 우 인

1991년 5월 31일

국무총리 정 원 식
서 리
국 무 위 원 권 이 혁
환경처장관

◎ 법률 제4,389호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본문중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이나 허가

취소를 받고도 그 배출시설·방지시설을 운영한 자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대형 환경오염사고가 빈발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하고 대기 중에 당해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는 자 등 환경범죄행위자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벌칙이 환경오염행위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에 비하여 미흡하므로 이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으로써 대기환경범죄에 강력히 대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 태 우 인

1991년 5월 31일

국무총리 정 원 식
서 리
국 무 위 원 권 이 혁
환경처장관

◎ 법률 제4,390호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에 관계되는 환경오염의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의범) ①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기타 대통령

환경관리인. 1991. 7

령이 정하는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3조(과실범) ①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제2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누범의 특수가중) ①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제2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또는 제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조(추정)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당해 배출만으로도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배출한 자가 있을 경우에 그 물질의 배출에 의하여 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 동종의 물질에 의한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이 발생하고 그 배출행위와 위협발생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에는 그 위험은 그 자가 배출한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유

최근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환경범죄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불법배출하는 행위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으나, 현행 환경관계법의 규정만으로는 이에 대처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유해물질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발생시키거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1.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및 유독물 등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되,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함.
2.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함.
3. 징역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고의로 죄를 범한 누범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4.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당해 배출만으로도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이 발생할 정도로 유해물질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 발생한 위험은 그 자가 배출한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

〈법제처 제공〉

내가 버린 오염물질 순환되어 내 몸속에